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장관 귀하

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성결신학원(성결대학교)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성결신학원(성결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0	0	0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
3. 학교 관련	0	0	0	지적사항 없음
4. 부속병원 관련				
계				

붙임 :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2 년 4 월 19 일

학교법인 성결신학원

감 사 조 철 연 (인)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2310호)

감 사 (인)

※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학교법인 성결신학원

이 사 장 박 광 일 (인)

피감사 기관장

성 결 대학(교)

총 장 김 상 식 (인)